# 아이 엠 샘

## □ 권리능력

#### I. 권리능력의 의의

민법 제3조는 "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"고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#### Ⅱ. 권리능력의 발생

#### 1. 출생

사람이 권리능력을 가지는 시기는 '출생한 때'이다.

- (1) 출생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통설, 일부노출설, 전부노출설, 독립호흡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.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고, 형법상으로는 진통설이 통설이다. 형법에서는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별하기 위하여 진통설을 따르고 있다.
- (2) 출생의 증명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. 위반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받는다.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이지, 신고로 인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(신고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창설적 신고라고 한다).

### 2. 태아의 권리능력

### (1) 의의

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, 출생 전의 '태아'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민법은 특정한 경우 태아의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(개별적 보호주의).

### (2) 민법의 규정

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, 상속, 유증, 인지 등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## 4

- □ 권리능력
- □ 의사능력
- □ 행위능력

## NOTE



#### (3) 태아의 법적 지위

태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. 그러나 태아가 이미 "출생한 것으로 본다"에 대하여 는, 그 의미의 해석에 따라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두 견해가 대립하 고 있다.

▷ 정지조건설 :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다고 보는 견해이다.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.

▷ 해제조건설 :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고, 다만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이다.

#### Ⅲ. 권리능력의 소멸

## 1. 사망

- (1)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(심정지설). 한편, 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과 관 련하여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된 때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(뇌사설).
- (2) 사망과 관련되는 법률관계 : 상속, 유언, 잔존배우자의 재혼, 보험금청구, 연금청구 등
- (3) 사망의 증명 : 동거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(보고적 신고).
- 2.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

#### (1) 동시사망의 추정

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.

## (2) 인정사망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사망제도는, 수해·화재·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·읍·면의 장에게 사망 통보를 하여야 하고, 이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 인정사망이다.

#### (3) 실종선고

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,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.

## □ 의사능력

## I. 의사능력의 의의

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신이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.

판례에 따르면,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,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(대법원 2002. 10. 11, 2001다10113 판결).

#### Ⅱ. 의사능력의 효력

의사무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상대방도 무효주장이 가능하다.

## □ 행위능력

## I. 행위능력의 의의

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.

### Ⅱ. 제한능력자제도

1. 민법상의 제한능력자

민법은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

인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. 이 중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아 나머지와 그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, 법정후견을 받는다는 공통 점 때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.

#### 2.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성격

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 따라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 이 규정은 재산행위를 모범으로 한 것이므로,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
#### 3. 제한능력자제도의 의의

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. 제한능력자 측은 본인이 유리할 경우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, 취소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,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. 이러한 점에서 제한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보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을 더 큰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.

#### Ⅲ. 미성년자

#### 1. 성년기

우리 민법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.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.

- 2. 미성년자의 행위능력
- (1) 원칙 :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▷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▷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,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 그리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.
- 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.
- (2) 예외 :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- ▷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
- ▷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
- ▷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
- ▷ 미성년자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행위

## NOTE

## □ 임의규정과 강행규정

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한다. 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관계되지 않는 사법이 해당되며, 채권법 중 계약법이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다.

강행규정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,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. 주로 공공의질서유지와 관계된 공법이 강행규정이며, 민법 중 물권편이나법질서에 관한 법,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 관련 법 등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규정이다.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.



- ▷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
- ▷ 대리행위
- ▷ 유언행위(만 17세)
- ▷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그 사원자격에서 한 행위
- ▷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
- 3. 법정대리인
- (1)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

1차로 친권자, 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된다. 미성년후견인에는 지정후견인 · 선임후견인이 있다.

(2) 법정대리인의 권한

▷ 동의권: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데 동의를 할 권리
▷ 대리권: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
▷ 취소권: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# Ⅳ. 피성년후견인

1. 피성년후견인의 의의

피성년후견인은 질병·장애·노령·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.

- 2. 성년후견개시 심판
- (1) 질병·장애·노령·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한다.
- (2) 본인 · 배우자 · 4촌 이내의 친족 · 미성년후견인 · 미성년후견감독인 · 한정후견인 · 한정후견감독인 · 특정후견인 · 특정후견감독인 ·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.
- (3)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야 한다.
- (4)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. 그리고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.
- 3.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



#### (1) 워칙

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·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.

#### (2) 예외

▷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, 그 범위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. 그리고 가정법원은 본인 · 배우자 · 4 촌 이내의 친족 · 성년후견인 · 성년후견감독인 ·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
▷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.

▷ 약혼·혼인·협의이혼·인지·입양·협의파양 등의 친족법상의 행위 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할 수 있다.

▷ 피성년후견인은 만 17세가 되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, 그 유언은 취소할 수 없다.

### 4. 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

- (1)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.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,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.
- (2)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. 그리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(3)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은 없고, 대리권만 가진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친족법상 행위에 관해 동의권도 가진다. 그 외에 취소권도 있다.

### 5. 성년후견종료의 심판

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, 가정법원은 본인·배우자·4촌 이내의 친족·성년후견인·성년후견감독인·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.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다.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.

#### V. 피한정후견인

1. 피한정후견인의 의의



피한정후견인은 질병·장애·노령·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.

#### 2. 한정후견개시 심판

- (1) 질병·장애·노령·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.
- (2) 본인 · 배우자 · 4촌 이내의 친족 · 미성년후견인 · 미성년후견감독인 · 성년후견인 · 성년후견감독인 · 특정후견인 · 특정후견감독인 ·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.
- (3)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야 한다.
- (4)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. 그리고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.
- 3.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

#### (1) 워칙

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·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 즉,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.

### (2) 예외

- ▷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그리고 가정법원은 본인 · 배우자 · 4촌 이내의 친족 · 한정후견인 · 한정후견감독인 ·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- ▷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 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, 가정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를 할 수 있다.
- ▷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,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.

### 4. 법정대리인



- (1)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,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.
- (2)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하고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권을 가진다.
- (3) 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의권·취소권이 없다. 그러나 동의가 유보된 경우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진다. 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하 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만 가진다.
- 5. 한정후견종료의 심판

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, 가정법원은 본인·배우자·4촌 이내의 친족·한정후견인·한정후견감독인·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.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다.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.

## Ⅵ. 피특정후견인

1. 피특정후견인의 의의

피특정후견인은 질병·장애·노령·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.

- 2.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
- (1) 질병·장애·노령·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 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.
- (2) 본인 · 배우자 · 4촌 이내의 친족 · 미성년후견인 · 미성년후견감독인 ·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.
- (3)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. 그렇다고 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3.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
- (1)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 특정후견은 1회적 · 특정적 보호제도이므로 후견의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고 그 특정한 사무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해진다.

(2)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. 나아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,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.

### 4.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

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다. 그리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다.